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0386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redacted]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시장

5. [redacted]시장

[redacted]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참가행정청, 항소인

[redacted]광역시장

[redacted]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10779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14.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경정청구세액' 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같은 목록 '취소세액' 란 기재 각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경정청구세액' 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5쪽 1행부터 제37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었어야 한다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주장

가)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43971 판결(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광주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제주)2019누1359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두30399 판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49108 판결 등 참조].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의 문언상 의미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의 의미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등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당시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법인세 등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 · 징수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당시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이나 입법 검토 자료(을 제4호증의 3, 을나 제1, 2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입법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이유는 종래 법인세의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던 세금을 독립세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세법만의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확립할 목적이었던 점, ② 이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의 계산 방법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에 세율을 곱하도록 규정한 반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라는 문언 대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점, ③ 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됨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 등에 있어서도 국가가 결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의 문언 및 그에 따른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종합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41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과 상이하다. 즉, 전자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임이 분명한 반면, 후자는 전자만큼 분명하게 그 취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 안에서 다소 다른 문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한다.

(다) 현행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편찬한 '2020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규정이 법인세와 다른 과세표준을 둘 수 있는 것처럼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함을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참가행정청의 2020. 8. 7.자 준비서면 첨부 참고자료). 이와 같은 법령 개정 내용이나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상 오해나 혼란 기타 불확실성이 있어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가 그 문언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해석되는 이상, 그 과세표준의 산정을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나 익금과 손금의 의미 등이 포함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내국법인은 전세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데[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은 2014. 12. 23.에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이상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하 같은 법률을 의미한다) 제2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이외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직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제1호),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간주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투자를 한 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여 납부된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그런데 내국법인의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다만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직접 · 간주 외국납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며(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경우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게 된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제3항). 한편,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그것이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수입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야 하나,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공제된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

(3)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기초하여 원고의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서는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였고,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제57조에 따른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개념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기 때문이다. 피고들은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법인세의 고유한 성격으로 법인세를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논리가 외국납부세액까지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의 신고 · 납부에 있어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에 산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할 수도 없게 한다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손금의 개념에 맞지 아니할뿐더러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지 손금에 산입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선택 권한이 없었다.

(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닌 이상,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당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까지 예상하여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나, 상황에 따라서는 손금산입방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어떤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에 기속되게 한다면, 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규정한 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

(라) 피고들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서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직접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는 세액공제를 전제로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에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따라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외국에 직접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공제한도'라 한다)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이와 같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직접 외국납부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직접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정해놓은 것일 뿐이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직접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으라는 취지의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4)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기초하여 원고의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였고,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산입되었다. 그러나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그것이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수입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익금에 산입될 것은 아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는 세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중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의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익금에 산입되는 것은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짐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시키는 것은 익금의 개념에 맞지 아니할뿐더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취지나 구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나)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닌 이상,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당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의제하여 산입하였다고 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도 세액공제와 전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의제하여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5) 참가행정청은 예비적으로,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만을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만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구 지방세법과 구 법인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한 결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행정청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그 근거 법령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이월된다는 점(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행정청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전혀 확정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참가행정청의 주장은 법령이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행정청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한 세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 간주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경우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처분 목록 '취소세액' 란 기재 각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당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처분 목록 '취소세액' 란 기재 각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문봉길

판사 이흥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별지)

처분 목록

처분청	처분일	귀속 사업연도	경정청구세액 (단위: 원)	취소세액 (단위: 원)
피고 [redacted]시장	2018. 1. 24.	2014	58,826,090	43,575,536
		2015	110,772,560	43,687,097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8. 1. 30.	2014	20,673,990	15,314,305
		2015	39,986,980	15,770,285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018. 1. 24.	2014	56,860,430	42,119,447
		2015	119,003,590	46,933,294
피고 [redacted]시장	2018. 1. 30.	2015	11,848,010	4,672,682
피고 [redacted]시장	2018. 12. 13.	2014	18,233,210	13,506,288
		2015	62,305,080	24,572,220
합계			**498,509,940**	**250,151,154**